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5562 (2022.5.5)
사실관계	말레이시아산 PCBA, 중국산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기타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데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조립해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를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해당 최종 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 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³⁾

사례명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5562 (2022.05.05.)

사실관계

요청자 Tianma America, Inc. (대리인: Miller, Canfield, Paddock and Stone, PLC)

제품명	• 자동차용 통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A (말레이시아산) • BLU 서브 어셈블리 (일본산) •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중국산) • 데코급 A 플라스틱 (기타 국가산)
용도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PCBA,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데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수입 부품을 반자동 공정을 통해 조립
 3. 외형·기능 검사
 4. 완성품 미국 수출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나아가 조립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조립이 단순한지 아니면 각 부품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불가분한 구성 요소가 될 만큼 복잡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판정 결과

▣ 해당 최종 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 일본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제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추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조립 공정이 PCBA를 상업적으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

결론

- ✓ 일본에서의 조립은 추가적 기능만을 부여할 뿐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의 최종 원산지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가 제조된 말레이시아임

② 시사점

- 특정 부품이 최종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5562 (2022.05.05.), <https://rulings.cbp.gov/ruling/N32556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p.+1026+%281982%29>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